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
----------	----

제출년월일 : 2000. 12. 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제27조는 2003.12.31까지임) 공익적 필요에 의한 구세감면제도를 2001~2003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조례의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폐지하는 반면, 지역경제활성화와 벤처기업육성촉진을 위한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서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과세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던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 나. 지방세법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 소유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 다. 우리구와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규정을 삭제함.
- 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감면조항 신설(안 제11조)

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육성촉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 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함 (안 제22조)

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맞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 구세감면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나. 입법예고 : 의견제출사항 없음

다. 기 타 :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에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①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6조(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 ----- ----- -----</p>	<p>○ 근거법령 명확화</p> <p>○ 내용은 현행과 같음(①만 삭제)</p>

※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삭 제>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
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
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
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
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삭 제>

※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 <삭 제>

번)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동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제4항에서 수익사업을 정하지 아니하였음

제2조의 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삭 제>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
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
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
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
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
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
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
면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
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
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자동차에 대한 번히세 폐지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중

<삭 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

제7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접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접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5. (현행과 같음)

○ 추징규정 보완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6. (헌행과 같음)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7. (헌행과 같음)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헌행과 같음)

제9조(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제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 (헌행과 같음)

1. 문화제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제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제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1. (헌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2. (헌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3. (헌행과 같음)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삭 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관계법령착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제13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종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포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삭 제>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의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국내에 2세대 이상을

○ 감면범위를 명확히 함

1. -----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의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부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부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60제곱미터이하인 -----

3. -----60제곱미터이하인-----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60제곱미터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
-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 건설교통부 요구('99.11.20) 및 감사원 질문사항(2000.10.6) 반영

<신 실>

제16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삭 제>

○ 우리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조문삭제

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p>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사업소</p>	<p>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p> <p>-----</p> <p>-----</p> <p>-----</p> <p>-----</p> <p>-----</p>
---	---

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8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
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
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
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
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민간출자비

-----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
면)

-----당해 납세의부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민간
출자비율만큼 감면제외

○ 감면시행시기를 명확히 함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제개발·제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 개선및경영안정지원음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제개발·제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제14조(재래시장제개발·제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 1. 시장제개발·제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당해 납세의부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 감면시행시기를 명확히 함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면제한다.

○ 면허세 과세 전환

○ 우리구와 관련이 없어 삭제

제2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삭 제>

간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
할)를 면제하고, 또 사업에 종사하
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
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그-----

제27조의4(부산광역시사하구의국
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사
하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
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
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
세를 추정한다.

○ 불필요한 조례내용 정비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제산을 취득한날

제27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의 3을 적용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당해 납세의부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

○ 감면시점을 명확히 함

제27조의5(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200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감면범위를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함

-----그-----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은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과세합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번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신 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부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청 요구 반영

<신 설>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의 통합으로 생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이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제25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26조(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산광역시 고시제95-258 호, '95.10.16)이전에

제24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삭 제>

○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면허세 과세전환

○ 우리구와 관련이 없이 삭제

취득한 자경농지중 농지소재지 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①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7조의2(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 당해 납세의부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

제6장 보 칙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

제28조(감면신청등) (현행과 같음)

는 별지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
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
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
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제30조(중복감면의 배제)(현행과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
같음)

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